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시, ○○, ○○, ○○, ○○, ○○군

훈계대상자 ① ○○○○시 ○○군 ○○○○과 지방○○○○ ○○○

② ○○○○시 ○○○○과 지방○○○○보 ○○○
(전 ○○군 ○○○○과)

내 용

지방○○○○ ○○○은 2017. 7. 14.부터 2017. 8. 16.까지 ○○○○시 ○○
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장 건립공사(건축)’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보 ○○○는 2015. 5. 6.부터 2015. 11. 30.까지 ○○○○시 ○○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설치공사(지선)’의 공사 감독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
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
도록 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정,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
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시, ○○, ○○, ○○, ○○, ○○군)

이에 따라 2015.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 및 ○○ 등 5개 구·군에서는 [붙임]과 같이 총 95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면 보호 등 공사

용 자재, 윙카, PE드럼, PE웬스, 칼라콘 등 교통안전시설물, 이동식 화장실, 공사 안내간판, 우의, 장화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명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비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205,434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정산업무 태만(○○○○시, ○○, ○○, ○○, ○○군)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 및 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²⁾'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³⁾할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3)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 및 ○○, ○○, ○○군에서 추진한 아래 [붙임1]의 ‘2016○○○ ○○ 산림생태(역새) 복원사업-○○구간 등 11건의 공사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⁴⁾하는 등 [사진1]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약 69,734천원을 지급 받았으며,

또한 ○○○○시 및 ○○청에서 추진한 [붙임2] ‘○○○○○ 고속도로 진입부 교통개선사업 등 2건의 공사의 경우 계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안전관리비를 청구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17,22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 ○○, ○○군에서 추진한 ‘○○관 리모델링공사(건축)’ 등 7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업체 간 거래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세금신고를 누락한 채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총 33,932천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시 및 ○○군에서 추진한 ‘○○○○(○○○)재해복구공사’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4)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를 통해 인정함.

등 [붙임3] 의 4건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청구 시 아래 [사진2]와 같이 다른 사업 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5,459천원을 지급 받았다.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표]와 같이 3억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전체 안전관리비 8,515,516천원의 3.89%에 달하는 119건의 약 331,780천원 상당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시 3억원 이상 대상공사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현황

구분 기관	공사 건수	안전관리비 지급액	부당집행금액		유형별 지적내용				
			합계 ①~⑤	환수액 ①~④	①사용불가 항목	②계산서 허위제출	③매입목록 수정발급	④사진 재사용	⑤부가세 미신고 (간이계산서 등)
합 계	361	8,515,516	119/ 331,780	112/ 297,848	95/ 205,435	11/ 69,734	2/ 17,220	4/ 5,459	7/ 33,932
	121	4,557,171	33/ 151,986	33/ 151,986	28/ 117,260	3/ 15,203	1/ 16,300	1/ 3,223	-
소 계	240	3,958,345	86/ 179,794	79/ 145,862	67/ 88,175	8/ 54,531	1/ 920	3/ 2,236	7/ 33,932
	38	325,788	5/ 8,396	5/ 8,396	3/ 2,830	1/ 4,646	1/ 920	-	-
	32	345,031	6/ 5,745	6/ 5,745	6/ 5,745	-	-	-	-
	26	407,102	13/ 17,832	10/ 8,803	10/ 8,803	-	-	-	3/ 9,029
	24	196,009	8/ 23,034	6/ 10,260	5/ 5,450	1/ 4,810	-	-	2/ 12,774
	120	2,684,413	54/ 124,787	52/ 112,658	43/ 65,347	6/ 45,075	-	3/ 2,236	2/ 12,129

※ ○○○○시 감사관실 제출자료 재구성(사용불가 항목 집행 대상 공사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시장,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보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청장, ○○청장, ○○청장, ○○군수는

[시정] ① [붙임1, 2, 3]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위조 등) 및 수정
발급(취소)하거나, 증빙하여 안전관리비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
(주) 대표 ○○○ 등 17개사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
347조(사기)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

② [붙임4]와 같이 안전관리비 집행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한 ○○○○(주)
대표 ○○○ 등 7개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
○관련 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상기 사안의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청장, ○○청장, ○○청장, ○○청장, ○○군수는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
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및 수정, 중복 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297,848천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33,932천원 상당액을 확인 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 ○○○실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미 확인된 시·군 및 ‘3억원 이

하의 공사'의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적정기한 내에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고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및 '월별 매입 목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공사에 집행(사용)여부 확인 및 중복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비고란에 사업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구매 물품 별 세부목록을 기재하는 등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